

#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(공항 입국자용)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'21.11.1.(월)>

## □ 유증상자



## □ 무증상자

### ○ 일반 국가 發 입국자



1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

\* 국내1회+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,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·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 된다면, '국내 예방접종완료자'로 간주함(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)

2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(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)

\*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쪽 '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' 참고

※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ac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하며,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

※ 1), 2) 대상자는 거주지(숙소)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

※ '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'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2쪽에 명시된 절차에 따름

○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

구분	예방접종 증명서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 검사
남아공/ 미얀마/ 페루 發	⇒ 제출여부 관계없음	⇒ 제출	⇒ 임시생활시설	⇒ 시설격리 <b>5일</b> + 자가격리 <b>5일</b>	⇒ <a href="#">격리해제전 검사</a>
탄자니아/ 칠레 發	⇒ 제출	⇒ 제출	⇒ 보건소	⇒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(수동감사)	⇒ 6~7일째 진단검사 실시
	⇒ 미제출	⇒ 제출	⇒ 임시생활시설	⇒ 시설격리 <b>5일</b> + 자가격리 <b>5일</b>	⇒ <a href="#">격리해제전 검사</a>
인도/ 남아공/탄자니아외 아프리카 發	⇒ 제출	⇒ 제출	⇒ 보건소	⇒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(수동감사)	⇒ 6~7일째 진단검사 실시
	⇒ 미제출 ※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입국자도 해당 절차 적용	⇒ 제출	⇒ 임시생활시설	⇒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	⇒ 격리해제전 검사
브라질 發	⇒ 제출여부 관계없음	⇒ 제출	⇒ 임시생활시설	⇒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	⇒ 격리해제전 검사
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* 상기 국가 외	⇒ 제출여부 관계없음	⇒ 제출	⇒ 보건소	⇒ 자가격리	⇒ 격리해제전 검사

※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

\* 단,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 내국인은 시설격리 **5일**(비용 자부담),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

※ 단기체류외국인은 ‘일반 국가 發 입국자’ 절차에 따름

※ 국가 및 조치사항은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변동 사항은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 게시

◆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매일 지정 안내

: 공문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) → 알림·자료 → 공지사항

## ○ 격리면제자

☞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
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‘격리면제서’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
구분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검사	
격리 면제서 제출	해외 예방접종 완료자	제출	관할보건소 * 결과 판정시까지 숙소 대기	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* 자가진단앱 설치	6~7일째 진단검사 실시 (보건소)
		미제출	항공기 탑승제한		
	미접종	제출	임시생활시설	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* 자가진단앱 설치	6~7일째 진단검사 실시 (보건소)
		미제출	항공기 탑승제한		

- ※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인도적 목적(장례식 참석)과 공무출장 후 입국하는 내국인은 ‘PCR음성확인서’ 제출 대상에서 예외함(미얀마 發 내국인도 예외 적용)
- 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등 ‘격리면제서’ 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 대응 절차는 Ⅲ.공항 검역대응 절차 → 4. 무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 → 다. 격리면제 대상자 → A비자 소지자 참고(입국후 6~7일차 검사는 불요함)
- ※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, 인도적 목적(직계가족 방문)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방법 및 절차 등 문의 (유선문의 또는 각국 대사관 누리집 참고)

## ○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(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)

구분	입국시	접종 이력 등록	증명서 발급	등록 후	재입국시
격리면제서 소지 + 해외예방접종완료 내·외국인	격리면제 *자가진단앱 설치	관할 보건소 등록	예방접종확인서	격리면제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(한국 국적자) (격리면제서 미소지)	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관할 보건소 등록	예방접종확인서	입국 후 <b>10일간</b> 격리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국내1회+국외 1회	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관할 보건소 등록 *등록 즉시 격리면제	예방접종증명서	격리면제 *자가격리앱 삭제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
- ※ 상기 대상자의 경우,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\*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
- \* ①성명, ②생년월일, ③백신종류, ④접종일, ⑤접종기관명,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(개인 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)를 함께 제출해야 함.
- ※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,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 (예방접종증명서)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(1쪽에 ‘일반국가 發 입국자’ 절차에 따름)